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94
----------	--------

제안년월일 : 2023년 6월 21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제정 조례안 시장의 책무와 피해자 지원 근거 개선, 효율적 예산 지원을 위해 기록장치 시범·부착을 공용차량에 우선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상위법 계류중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의 책무를 조정함(안 제3조)
- 기록장치의 시범·부착을 공용차량에 우선함(안 제7조)
- 피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 수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록장치 지원)”을 “(기록장치 시범·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 소유자가 급발진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으로, “부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을 “시범·부착”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하여 발생한 인명·재산의”를 “인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박중화 의원님 발의안	교통위원회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 ----- 시행할 수 있다.</p> <p>② ----- ----- ----- 할 수 있다.</p>
<p>제7조(기록장치 지원) 시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급발진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기록장치 시범·부착) --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 ----- 시범·부착----- -----.</p>

제8조(피해자 지원) 시장은 급발
진의심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
명·재산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1. ~ 3. (생략)

제8조(피해자 지원) -----

----- 인한 -----

--.

1. ~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록장치 시범·부착)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부착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지원) 시장은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법률상담
2.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